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년월일 : 1998.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최근 침체된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농촌경제 안정대책'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시세감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재산세의 50/100이 감면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규모를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나.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함(안 제14조의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가.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허가 공문 사본 1부

나. 관련법령(발체)1부

다. 입법예고결과 1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를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까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각각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p>1.<생 략></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생 략></p>	<p>1.<현행과 같음></p> <p>2. ----- 85제곱미터이하 -----</p> <p>-----</p> <p>-----</p> <p>-----</p> <p>-----</p> <p>-----</p> <p>3.<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p>	

70/7

"관인생략"

경 상 북 도

우702 702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 950-2714 / FAX 950-2319 / 담당 김연근

문서번호 세정 13400 - 63636

시행일자 1998. 5. 30 (30년)

경 유

수 신 시 장 · 군 수

참 조 세 정 · 세 무 · 제 무 과 장 ^세

조
계
2
9

제 목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허가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89 ('98.5.27)와 관련임.

2.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기 바라며,

3. 아울러 긴급하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지방세제 지원계획(참고자료) 1부.

3.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경 상 북 도 지 사

행정부지사전결

5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정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번	행	개	정(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	-----
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
의하	어	건설업	-----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고부일이전에	-----
교부받	거나	동법시행령	-----
제8조의	규정	에	-----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
자들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고	용지	및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	-----
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
과세기	준일	현재	-----
5세대이상	을	임대목	-----
적에	직접	사용하는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을	말한다)용	-----
부동산에	대하여	는	-----
다음	각호의	1에	-----
정하는	바	에	-----
의하여	채산세와	종합토지세	-----
를	감면한다.	(단서	-----
생략)	-----	-----	-----

<p>1.(생략)</p> <p>2. 실효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생략)</p>	<p>1.(현행과 같음)</p> <p>2. -----85제곱미터이하인 ----- ----- ----- ----- ----- -----</p> <p>3.(현행과 같음)</p>
--	--

500+
1608 "관인생략"
경 상 북 도

우편번호 702 7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 950 2714 / 전송 950 2319
세 정 과, 세 정 과 장 한 재 석, 세 정 과 장 라 준 이, 담 당 자 김 연 권

문서번호 세정 13400 - 161
시행일자 1998. 7. 23 (30년)
경 유
수 신 사 장 · 군 수
합 조 세 정 · 세 무 · 재 무 과 장

제 목 : 시 (군) 세 감 면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일 괄 히 기

1.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44 ('98. 7. 20)와 관련임.
2. 최근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시 (군) 세 감 면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을 붙임 과 같 이 송 부 하 니 지 방 세 법 제 9 조 의 규 정 에 의 한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의 허 가 를 얻 은 것 으 로 보 아 시 군 의 회 의 의 결 을 거 쳐 공 포 시 행 하 기 바 랍 니 다.

붙 임 : 시 (군) 세 감 면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1부. 글.

경 상 북 도 지 사

전결 행정부지사 박상희

095

115 XH4

9

111 75:21 22-70-96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실〉	제〇〇조(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득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 불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

관 련 법 령 (발췌)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3.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입법 예고 결과

- 예 고 일 : 1998년 7월 27일
- 예고기간 : 1998년 7월 27일 ~ 1998년 8월 17일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게재
- 의견제출 : 없음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12호
- 의안명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총무국 세무과

2. 제안이유

최근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농촌경제 안정대책」 중 지방세제 지원 방안을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재산세의 50/100이 감면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규모를 전용면적 60m²이하에서 85m²이하로 확대함(안 제12조 제1항 제2호)
- 나.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함(안 제14조의 2)

4. 검토의견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과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농가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농촌경제 안정대책」 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중 제1항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전용면적 85㎡이하로 확대하여 시행하되 부칙 제2항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
- 안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축산물가공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토록하되 부칙 제2항에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최근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와 농가의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국적으로 개정 시행코자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998. 9.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완 기

‘98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보건소신축)

영 주 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보건소 신축)

의안번호	14
------	----

제출년월일 : 1998. 9 .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 사유

-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건소 주도하에 통합조정하고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시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 치 : 영주시 휴천2동 466-6 (현 건설도시국)

나. 시설규모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 건축면적 : 1,388㎡ (420평)

- 지하1층, 지상2층

다. 사업비 : 1,388,640천원

(국고보조금 : 972,048천원, 증액교부금 : 416,592천원)

라. 사업기간 : 1998년 ~ 1999년(2년)

마. 현황

현 건설도시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옆과 앞은 공터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임.

바. 신축부지 타당성

- 본청과 업무 연계 용이
 - 사회복지, 위생, 수질검사등 관련부서와 연계용이
-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 복합 민원시 동일공간으로 민원처리 신속
- 국비 지원 기준 부합
 - 주민 이용이 편리한 시내 중심지 (시외곽지 선정시 지원 제한)

※ '98. 2. 11 보건복지부 의료기술지원단 현장 조사시 적지 판단

3.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서(총괄표) : 붙임

-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신축 예정지 위치도 1부.
- 건물 배치도 1부.

4. 관련법규

- 지방제정법 제7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 및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8조 1항

5. 기타

보건소 신축계획은 보건복지부 '97년도 예산으로 금년내 착공되어야 할 사업으로 설계기간 (2개월)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심의 결정이 요망됨

공유 재산 관리 변경 경제 계획서

199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m², 천원)

회계명 : 일반회계

구	분			기 의 결			금			회			합			계		
	전수	수량	금액	전수	수량	금액	전수	수량	금액	전수	수량	금액	전수	수량	금액	전수	수량	금액
취	토지	1	1,023	803,400						1			1	1,023	803,400			
	건물	2	949.81	542,600	1	1,388	1,388,640			3			2,337.81	1,931,240				
	기타																	
부	토지	1	1,023	803,400						1			1	1,023	803,400			
	건물	1	288.81	46,600						1			288.81	46,600				
	기타																	
처	토지	1	661	496,000						1	1,388	1,388,640				2	2,049	1,884,640
	건물	1	614	176,700												1	614	176,700
	기타	1	90.96	23,300												1	90.96	23,300
분	토지	1	614	176,700												1	614	176,700
	건물	1	90.96	23,300												1	90.96	23,300
	기타																	
부	토지																	
	건물																	
	기타																	
부	토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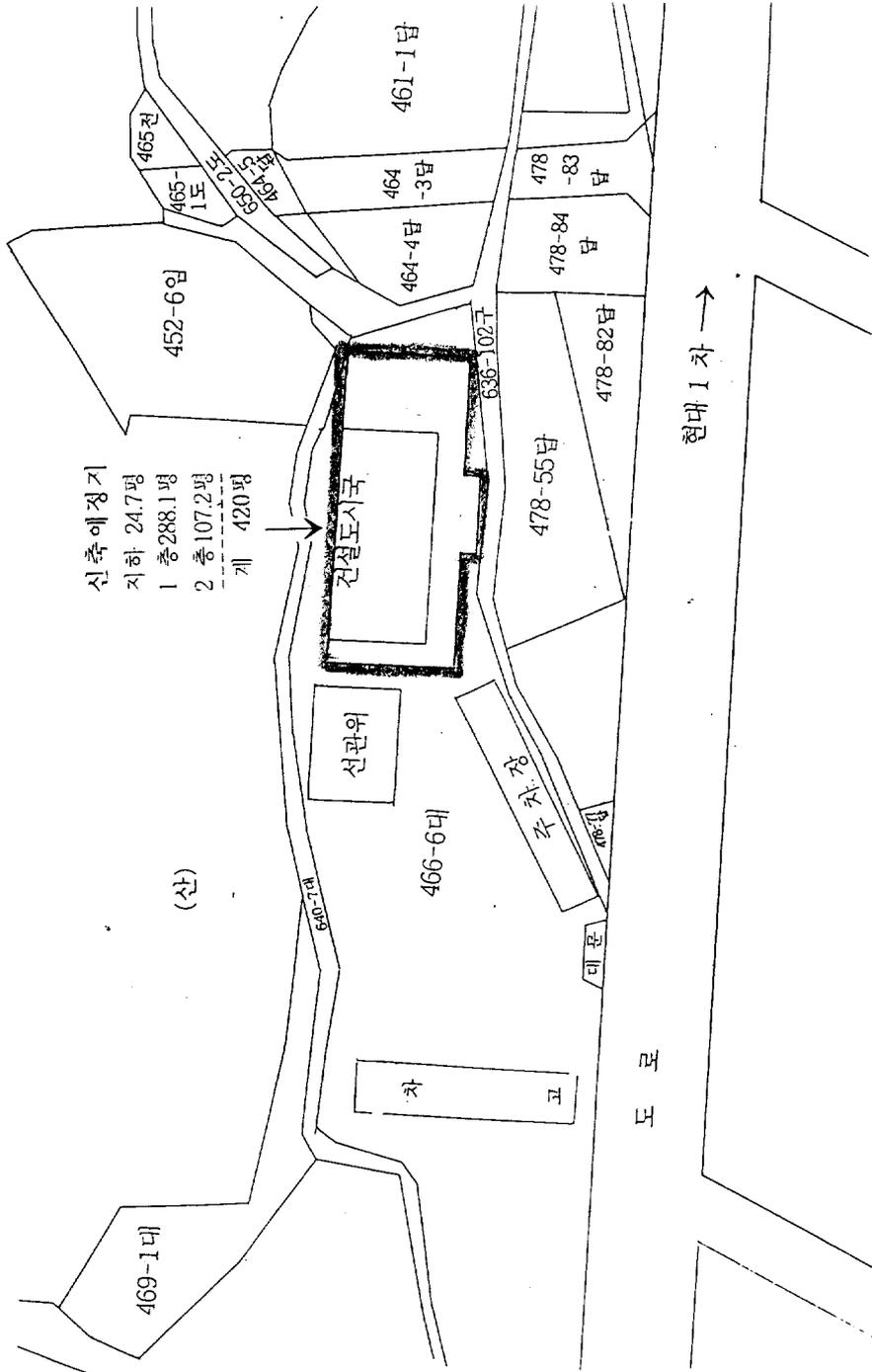
1998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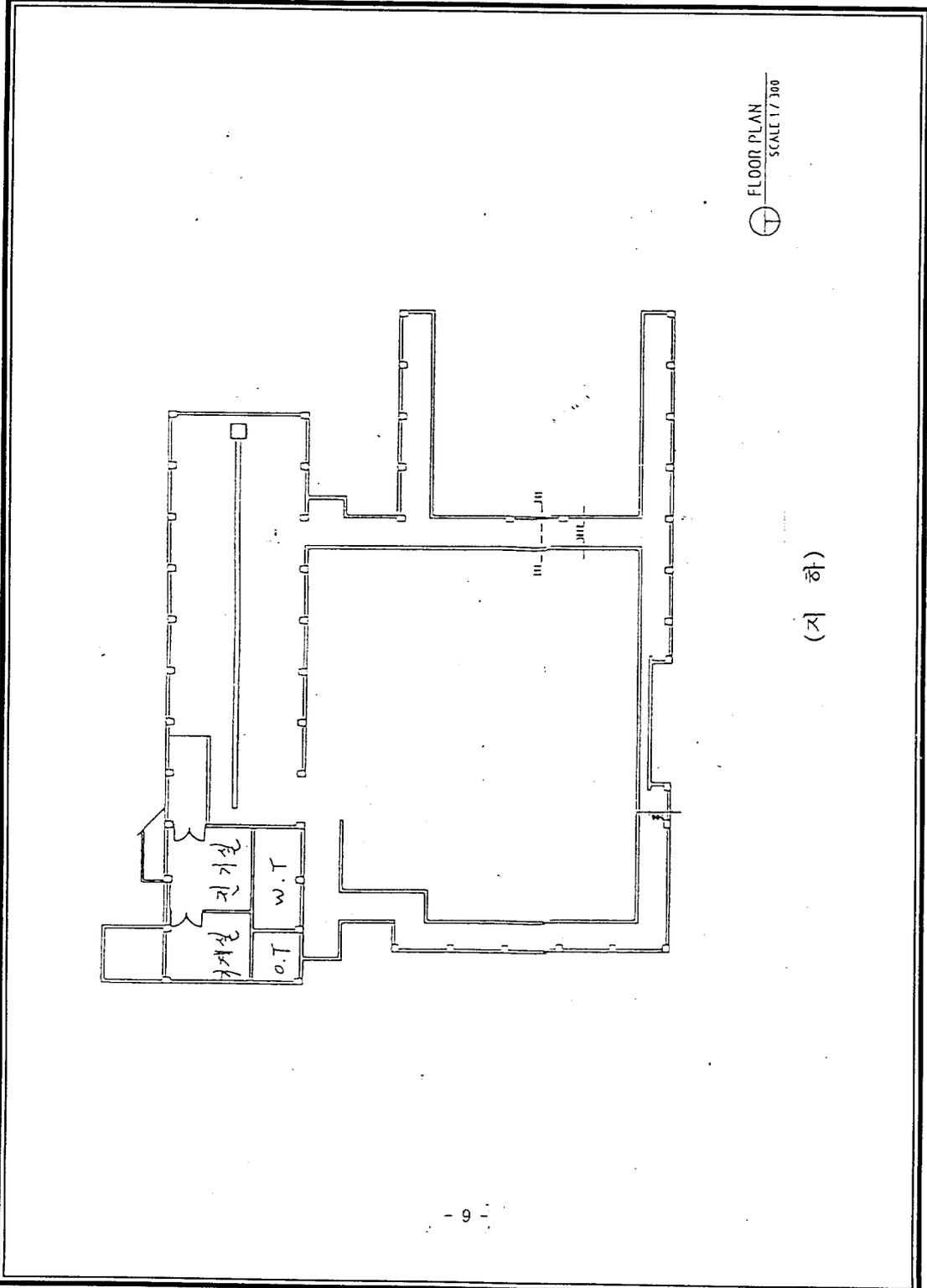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회계명 : 일반회계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1	건물	휴천2동 466 - 6	1,388 (420평)	'98 ~ '99	보건소 신축	영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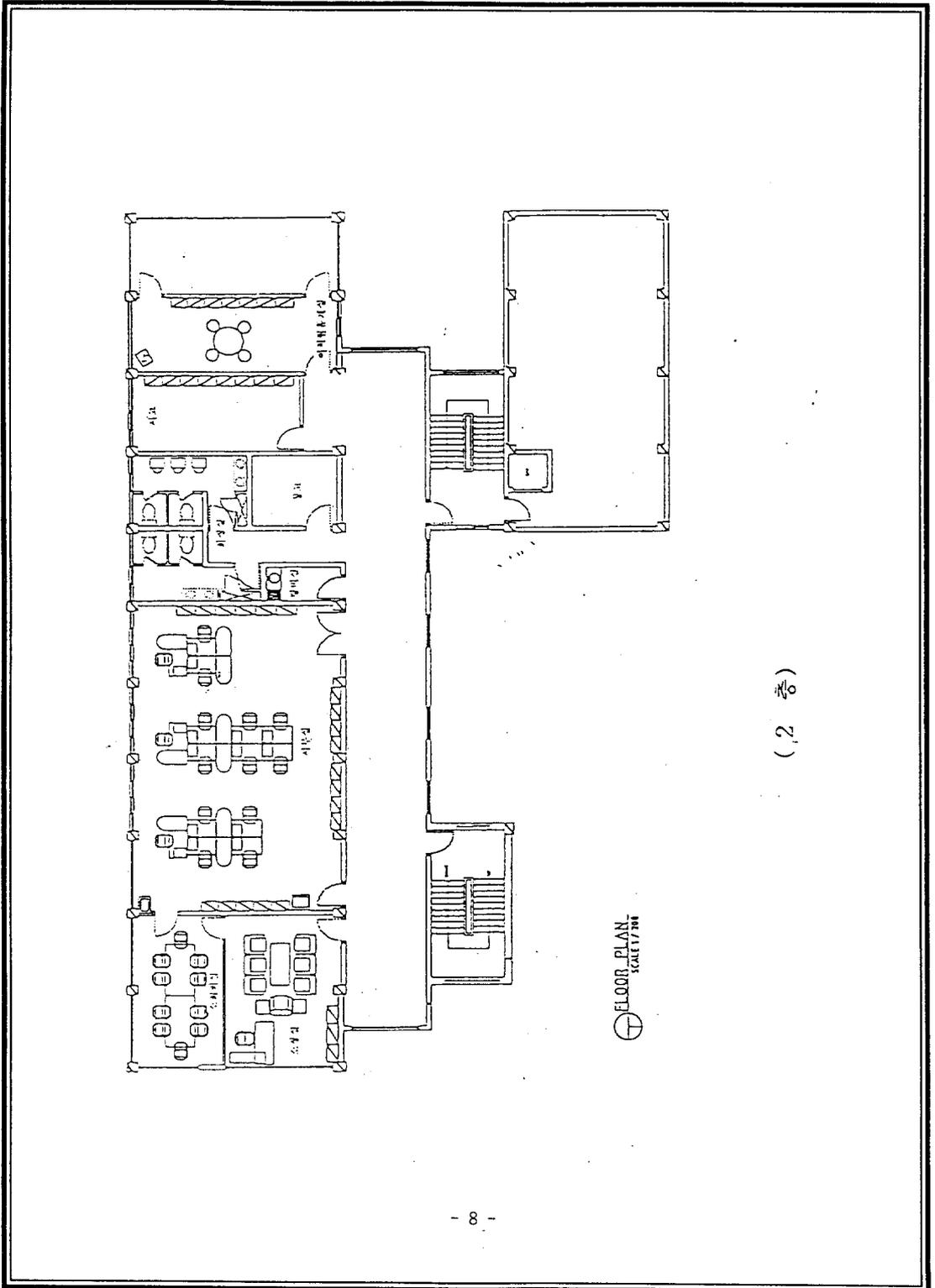
신축 예정지 위치도





FLOOR PLAN
SCALE 1/300

(지 하)



(2 층)

FLOOR PLAN
SCALE 1/300

의안검토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14호
- 의안명 :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보건소 신축)
- 해당부서 : 보건소

2. 제안이유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보건소 주도하에 통합조정하고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위치 : 영주시 휴천2동 466-6(현 건설도시국)

나. 시설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 건축면적 : 1,388㎡(420평)
- 지하1층, 지상2층

다. 사업비 : 1,388,640천원

(국고보조금 : 972,048천원, 증액교부금 : 416,592천원)

라. 사업기간 : 1998년 ~ 1999년(2년)

마. 현 황

현 건설도시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옆과 앞은 공터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임.

바. 신축부지 타당성

- 본청과 업무연계 용이
 - 사회복지·위생·수질검사 등 관련부서와 연계용이
-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 복합 민원시 동일공간으로 민원처리 신속
- 국비 지원 기준 부합
 - 주민 이용이 편리한 시내 중심지 (시외곽지 선정시 지원 제한)

※ '98. 2. 11 보건복지부 의료기술지원단 현장 조사시 적지 판단

4. 검토의견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보건소신축 건물은 예산액 1,388,640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재산범위인 2억 5천만원 이상의 건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임.
- 보건소 신축계획의 추진과정은
 - '97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영주시는 2차에 걸친 평가

결과 1위로 평가되어, '97. 9. 5. 보건소 신축대상으로 영주시, 포항 북구, 안동, 문경 등 4개 시와,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대상으로는 영덕·칠곡 2개군 등 모두 6개 시·군이 '97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었고,

- 영주시는 보건소 이전신축(420평) 사업비와, 방문보건차량 구입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978,715천원, 증액교부금 419,925천원 등 총 1,398,640천원을 '97. 12. 10 교부결정통지 받았으며, 이중 '97년도에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10,000천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비 1,388,640천원은 미집행중 입니다.

○ 신축대상 부지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휴천동 466-6번지 7,891㎡인 현 시청내 건설국 부지와 영주동 19-1번지 6,006㎡인 현 의회내 보건소 및 창고와 공터인 부지, 영주동 470-62번지 6,298㎡인 현 시민회관사무실 및 전시실 부지, 상망동 647-4번지 1,983㎡인 상망동택지정비 사업지내 시유지 등 4개소 중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 조건인

- 주민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생활권과 인접지역
- 시외곽지 이전 불가
- 건물 연면적의 2배 이상인 지역의 조건을 갖춘
 - 영주1동 19-1번지 현 시의회 청사내 부지와
 - 휴천동 466-6 시청사 부지내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 '97. 9. 30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 제1안으로 시의회 청사부지내로 하되
 - 제2안으로 상망동 택지정비사업지내 시유지를 선정하였으나,

- '98. 1. 20 시의회 의원간담회 설명시, 좀더 시간을 두고 주민 여론을 수렴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 '98. 7. 29 시의회 의원간담회시
 - '98. 2. 4 ~ 2. 11(1주간) 보건소 부지선정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시전체 인구의 1.5%인 2,038명을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63명중 67%인 309명이, 현 시의회내 신축을 찬성하였고, 24%인 110명은 현 시청내 건설국 부지를 찬성하였으며, 기타 9%의 결과가 나왔으며,
 - '98. 2. 11 의료기술지원단(단장외 1명)의 현장 방문시 건축면적을 420평을 620평으로, 현 시청 테니스장 및 차고지에 신축토록 하고, 200평 확대에 따른 사업비 853백만원은 시비로 부담하며, 의료기술지원단에서는 사업비외에 추가로 의료장비, 전산화 장비 및 안정 용산보건진료소 건축에 따른 사업비로 350백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을 보고하였음.
- '98. 8. 25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비 추가부담분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당초 확정된 420평 규모로 신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 '98. 9. 11 설계용역 입찰을 시행하여 경산시 중앙동 소재 동아건축사무소(대표:박기룡)에 낙찰되었음.
- 금번 제출된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내용은
 - 휴천동 466-6 시청사내 현 건설도시국을 철거하고 사업비

1,388,640천원으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건축면적 1,388㎡ (42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며,

- 199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중 기 의결된 내용은
 - 취득중 매입분은 영주등기소 매입 건으로 예산 미확보로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기타취득은 근로복지회관 신축 건이고,
 - 처분중 매각분은 영주1동 구 영풍군수관사옆에 위치한 구 농협지부장관사를 처분한 내용입니다.
- '9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 신축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97년도에 사업비 1,388,640천원을 기 교부받아,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98년도중 공사계약을 하여야만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할 수가 있고, '98년도중 공사계약이 되지 않으면 전액 반납하여야 하는 사업임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998. 9.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완 기